

# 임원 복무 규정

( 제정) 2020.08.27. 규정 제101호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(재)김해시복지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재단의 임원(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복무 규정은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를 말한다.

## 제2장 복 무

**제4조(성실의 의무)**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,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복종의 의무)**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재단의 업무 감독 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6조(직장이탈금지)** 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.

**제7조(친절·공정의 의무)**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친절·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엄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청렴의 의무)**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.

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장이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를 할 수 없으며,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.

**제10조(품위유지의 의무)**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1조(영리업무 및 겸직업무)**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**제12조(정치운동의 금지)** 임원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2.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3.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4.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
5.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

**제13조(근무시간 등)** ① 임원의 근무시간, 출장에 대하여는 「취업 규정」을 준용한다.

② 임원의 일반휴가는 1년 미만은 13일, 1년 이상 2년 미만은 14일, 2년 이상(연임포함)은 1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,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급휴가로 하되 1일당 총 연봉액의 365분의 1을 감한다.

③ 임원의 특별유급 휴가는 「취업 규정」에 따라 부여한다.

**제14조(재단에 대한 책임)** 임원이 법령·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## 제3장 보 수

**제15조(보수)** 임원의 보수는 「보수 규정」, 「연봉제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.

## 제4장 상 별

**제16조(포상)** 대표이사는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재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.

**제17조(문책)**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.

1.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
2.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

**제18조(문책의 종류)**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,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.

**제19조(문책의 효력)**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제하며, 이 경우 「보수 규정」에 의거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② 경고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「보수 규정」에 의한 봉급의 10분의 3을 감하여 지급하며, 당해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연임을 제한하고,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한다.

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, 주의를 3회 받을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.

④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.

**제20조(문책의 절차)**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명권자가 행하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은 할 수 있다.

**제21조(의원면직)** ① 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이 제22조의 규정에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1. 이사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
2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
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
4. 타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

**제22조(징계양정기준)** 임원의 징계 양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.

## 제5장 보 칙

**제23조(인사관리)**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임원의 성과관리)**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(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)에 대표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다.

②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(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)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<규정 제101호 2020.08.27.>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(제22조 관련)]

## 징 계 양 정 기 준

| 비위의 도 및<br>과실<br>비위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| 비위의 도가<br>중하고 고의가<br>있는 경우 | 비위의 도가<br>중하고<br>중과실이거나<br>비위의 도가<br>경하고 고의가<br>있는 경우 | 비위의 도가<br>중하고<br>경과실이거나<br>비위의 도가<br>경하고 중과실인<br>경우 | 비위의 도가<br>경하고 경과실인<br>경우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성실의무 위반<br>가. 직무태만 또는<br>회계질서 문란<br>나. 기타 | 해 임<br>해 임                 | 해임, 경고<br>경 고   | 경 고<br>주 의  | 주 의<br>주 의               |
| 2. 복종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경 고   | 주 의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직장이탈금지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경 고   | 경 고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4. 친절공정의무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경 고   | 경 고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5. 비밀엄수의무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| 경 고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6. 청렴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| 경 고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7. 품위유지의무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경 고   | 주 의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8. 영리업무 및 겸직<br>금지의무 위반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| 경 고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
| 9. 정치운동금지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 임                        | 경 고   | 주 의   | 주 의                      |